

瑞山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9. 12. 22
總務委員會

1.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1999. 12. 14
- 나. 提出者：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1999. 12. 16
- 라. 上程日字：1999. 12. 22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稅務課長 安光來)

가. 提案理由

- 그동안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폐문이나 부재시 반송율이 높아 많은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징세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어, 이의 개선방안으로 하부조직(리·통·반장)을 활용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게 함으로써,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17조의 1)
 - 하부조직을 활용하여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리·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서류의 송달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 준용 규정과 건당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 1건당 600원 이내의 송달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리·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는 서류의 대상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로 한다는 규정 신설.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그동안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 폐문이나 부재시 반송율이 높아 납세자들의 불편, 지방세 징수업무의 차질과 징세비용 증가의 주요원인을 해소하고자
- 지방세법 제51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39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으로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서산시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질의 : 리·통·반장의 불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답변 : 리·통·반장과 약정을 맺고 시행할 것이며, 송달 보상을 지급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 : 등기우편 요금이 1,170원인데 비하여 송달 보상금은 매 1건당 600원 이내로 할 경우 다소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 답변 : 본 제도를 처음 시행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5. 討 論 및 少 數 意 見 : 없었음

6. 審 査 結 果 : 수정안대로 가결

※ 수정안 「붙임」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1제2항중 “매1건당 600원 이내”를 “매1건당 800원 이내”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7조의1(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산시리·통장임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리·통장과 서산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부 교부 근거에 의하여 건당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1건당 600원 이내의 송달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리·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는 서류의 대상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 고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에 한한다.	제17조의1(서류송달의 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매1건당 800원 이내 ③ (개정안과 같음)

의안번호	제 125호
의결년월일	1999.12.24 (제 47회)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12. 14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
----------	-----

제출년월일 : 1999. 12. 1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그동안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폐문이나 부재시 반송율이 높아 많은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징세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어 이의 개선방안으로 하부조직(리·통·반장)을 활용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게 함으로써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17조의1)
 - 하부조직을 활용하여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리·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서류의 송달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 준용 규정과 건당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 1건당 600원 이내의 송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리·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는 서류의 대상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로 한다는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나. 예산조치 : 별 첨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99.11.10 ~ '99.11.29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접수사실 없음

라. 합의·협의 :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 예산분야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산시리·통장임명예관한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리·통장과 서산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부 교부 근거에 의하여 건당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1건당 600원 이내의 송달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리·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는 서류의 대상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7조의 1 (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산시리·통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리·통장과 서산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부 교부 근거에 의하여 건당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1건당 600원 이내의 송달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리·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는 서류의 대상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에 한한다.</p>